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4월 12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(전예슬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오산시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골자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시장의 책무 및 반도체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-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반도체산업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반도체산업 육성발전 추진단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4년 4월 17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4
 - 전자메일 : dbsgudfh@korea.kr

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반도체산업”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·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,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·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.
2. “협력모델”이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, 소재·부품·장비분야에서 둘 이상의 기업, 기관이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,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시장은 오산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
2.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·여건 및 전망
3.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, 연차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
4.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5.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6.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방안
7.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·지원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5조(반도체산업의 육성·지원)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·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
2. 산·학·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
3. 반도체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
4.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·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
5.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
6.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
7.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·정착
8. 반도체 관련 세미나,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, 참여, 참관
9. 해외 교류,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
10.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·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

수행하는 출자·출연기관 및 법인·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반도체산업 취업지원사업의 시행)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2.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·훈련 등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)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공동기술개발 및 공동기반구축
2.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·생산 등을 위한 투자
3. 신뢰성평가,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
4.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
5. 신뢰성 보증
6.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협력체계의 구축)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계·연구기관·산업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반도체산업 육성발전 추진단의 구성 등)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발전 추진단(이하 “추진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추진단은 오산시 반도체산업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.

1.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
2.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촉진·판로 지원
3.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
4.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
5.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·운영 지원
6.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,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
7. 반도체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및 마케팅 지원
8.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추진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